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4. <u>I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</p> <p>5.~10.(생략)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I클래스 수익증권 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</u></p> <p>5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4. I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</p> <p>다.·라. (생략)</p> <p>5.~10.(생략)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I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다.·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~10.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